

(參 照)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

○ 기 간 : 2000. 4. 15(토)~4. 22(토) 【8일간】

구분 일시	개 요		비 고
	본 회 의	위 원 회	
4. 15(토) 11:00	○ 개회식 ○ 제1차 본회의 ·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· 2000.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제안설명 : 행정국장) ·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· 조례안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·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· 판교IC통행료 징수민원대책을 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·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 조사건의 안		장소) 본회의장 사회) 의사담당
4. 16(일)	휴 회 (공휴일)		
4. 17(월) 09:30		○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·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(의회사무국 소관)	장소) 의회운영위원회실
10: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· 조례안등 일반의안 심사(10:00)	장소) 각 상임위원회실
4. 18(화) 10: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·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(본청, 사업소)	장소) 각 상임위원회실
4. 19(수) 10:00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·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(사업소, 구청)	"

구분 일시	개요		비고
	본회의	위원회	
4. 20(목) 10:00	○ 제2차 본회의 · 시정질문		장소) 본회의장
4. 21(금) 10:00	○ 현장방문 · 농수산물유통사업소	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(10:00) · 위원장, 간사 선임 ·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	장소) 의회운영위원회실
4. 22(토) 11:00	○ 제3차 본회의 ·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 ·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○ 폐회		장소) 본회의장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

연번	안 건 명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1	○성남시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	기획예산과	각 위원회
2	○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	회 계 과	행정경제
3	○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	총 무 과	"
4	○성남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"	"
5	○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	"	"
6	○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	기획예산과	"
7	○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	여성복지과	사회복지
8	○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	문화체육과	"
9	○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(지급)보증동의안	주 택 과	도시건설
10	○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	재난재해관리과	"
11	○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	교통행정과	"
12	○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(안)의견청취	도 시 과	"
13	○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(안)의견청취	도 시 과	"
14	○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	청 소 과	사회복지
15	○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	총 무 과	행정경제
16	○판교·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	판교IC특위	본 회 의
17	○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건의안	감철홍의원외 16인	"
18	○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개선 요청의 건	교통행정과	도시건설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																				
1	성남시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	☐ 제안이유 국·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증감등 여건변동으로 세입·세출정리가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☐ 주요골자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2000년도 기정예산</th><th>2000.제1회 추경예산액</th><th>증 감</th><th>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636,432</td><td>695,733</td><td>59,301</td><td>9.3</td>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<td>427,104</td><td>479,639</td><td>52,535</td><td>12.3</td>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<td>209,328</td><td>216,094</td><td>6,766</td><td>3.2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2000년도 기정예산	2000.제1회 추경예산액	증 감	%	계	636,432	695,733	59,301	9.3	일반회계	427,104	479,639	52,535	12.3	특별회계	209,328	216,094	6,766	3.2	기획예산과	각위원회
구 분	2000년도 기정예산	2000.제1회 추경예산액	증 감	%																				
계	636,432	695,733	59,301	9.3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427,104	479,639	52,535	12.3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209,328	216,094	6,766	3.2																				
2	성남시2000년 제2차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	☐ 제안이유 ○상대원동 일원 주택밀집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복지회관 및 노외주차장을 건립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○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된 시유지에 학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며 ○정자동 160번지 벤처기업 집적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유망벤처기업의 지원육성 및 수요에 대처 ○계속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대지를 처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기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취득 : 토지 4필지 7,217.6㎡, 건물 5필지 549.47㎡ └ 일반회계 4,457,036천원 └ 교통사업특별회계 160,563천원 ○처분 : 토지 21필지 25,088.7㎡ 7,745,550천원	회 계 과	행정경제																				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3	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	□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함 (안 제4조제2항) ○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우선적으로 정하되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가능(안 제6조) ○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동장이 운영 (안 제7조) ○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제2항) ○ 감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 근거 마련 ○ 주민자치위원회 구성(안 제17조) ○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일부터 폐지(안 부칙제3항)	총 무 과	행정경제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4	성남시통·반설 치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통장의 임기를 도시, 농촌지역 구분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상 주거이동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동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○성남동지역 지번변경에 따른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○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자긍심 고취 □ 주요골자 ○성남동지역 통과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(안 제4조 별표) ○농촌지역 통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신설(안 제7조제1항) ○통장신분증 발급규정 신설(안 제8조제3항)	총 무 과	행정경제
5	성남시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와 동별 생활보 호담당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○사회복지직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	총 무 과	행정경제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6	성남시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	☐ 주요골자 ○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 · 총 정 원 : 2,115명 → 2,141명(증 26) · 집 행 기 관 : 2,088명 → 2,114명(증 26) · 의회사무국 : 27명(변동없음) ☐ 제안이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2조) ○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·조정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(안 제3조) ○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(안 제4조제1항) ○ 위원회의 심의사항(안 제5조) ○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, 의결방법등(안 제6, 7조)	기획예산과	행정경제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7	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소에서 여성복지과로 직제변경가 변경되므로 변경된 일부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개선으로 사용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여성복지회관의 위치와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 ○ 사용료·수수료를 성남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였으나 사용료 및 수수료로 납부하여 납부자가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료·수수료 반환이 가능토록 함 ○ 수강생자녀 수탁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교사를 둘 수 있으며 보육교사와 종사자의 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○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하며 어린이 수탁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신설	여성복지과	사회복지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8	성남시청소년 문화의집설치 및운영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청소년 전용문화·휴식공간 제공하고 ○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자발적인 표현기회 제공 및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형성 마련 ○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시설 설치근거 마련 (안 제3조) ○ 관리운영의 위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 2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(안 제5조) ○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을 규정함 (안 제7, 8조) ○ 수탁자가 계약위반 및 목적위배시 위탁취소 (안 제10조)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9	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(지급)보증동의(안)	☐ 제안이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하는데 있어 성남시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보증금액 : 2,685백만원 (일금이십육억팔천오백만원) ○ 보증기관 : 성남시 ○ 전세자금신청대상자 -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 - 전세보증금 2,0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 ○ 지원규모 : 세대당 1,000만원 이내 ○ 지급보증은행 : 한국주택은행 성남지점 ○ 지급보증기간 : 융자일로부터 2년 (연기신청시 연기기간내) ○ 지급보증내역 - 자 금 명 :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- 상환조건 : 2년내 정기상환 (전세 재계약시 1회연장가능) - 이 율 : 년리 3% - 상환재원 : 신청자 부담	주 택 과	도시건설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0	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4. 12. 22.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되면서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1995. 12. 29.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으나 농어촌정비법에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 관련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조례를 부분개정 □ 주요골자 ○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의 “농지개량시설”을 농어촌정비법의 “농업기반시설”로 “농촌근대화촉진법”을 “농어촌정비법”으로 변경 ○ 농지기반시설및용수의 목적외사용료 징수범위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징수범위에 맞게 개정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
11	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(1999. 3. 3. 대통령령 제16168호)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	교통행정과	도시건설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		□ 주요골자 ○ 교통유발량이 적은 무인변전소, 가압장, 환풍 시설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(안 제4조제3항) ○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 감면을 최고 90/100까지로 경감율을 확대(안 제5조제1항) 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도 경감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시 최고 90/100까지 경감을 적용(안 제4조제2항) ○ 교통량감축의무 및 추가감축방안 구분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각각의 경감비율의 합산으로 적용(안 제5조제4항) ○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이행하여야 함(안 제6조제1항) ○ 교통량감축이행 프로그램별 탄력성 있게 경감을 적용시 반영(안 제9조)		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2	성남도시계획 결정및변경결정 “안”의건청취	□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등 구역의 지정 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구역에서 해제조정함으로서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개발제한구역 해제 : 고등동, 신촌동 일원 - 485,800m' ○ 자연취락지구 신설 : 고등동, 신촌동 일원 G.B해제지역 - 485,800m' ○ 주차장신설 : 고등·신촌동일원 - 4개소 3,500m' ○ 공용의 청사 신설 : 고등동 452-5일원 - 1000m' ○ 공원신설 : 고등동 453번지 일원등 - 3개소 4,590m'	도 시 과	도시건설
13	성남도시기본 계획변경수립 “안”의건청취	□ 제안이유 지역내외의 급격한 인구증가, 소득수준 향상등으로 인한 사회적변화에 대처하고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	도 시 과	도시건설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4	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	☐ 주요골자 ○목 표 년 도 : 2016년 ○인구수용계획 : 120만명 ○계획구역면적 : 141.72km² ○주요변경계획 · 야탑동용도지역 일부변경 : 53,820m² (주거 : 16,400m², 상업 : 37,420m²) · 금토동일원 화훼테마공원 : 2,600,000m² · 낙생자연공원(유원지) : 1,530,000m² · 백현유원지 확장 : 531,320m² ☐ 제안이유 100톤 하수슬러지 소각장 보완공사가 2000년 6월까지 완료예상됨에 따라 소각장의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민간위탁근거 : 폐기물관리법 제58조,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(관리운영의 위탁) ○대상 및 위탁기간 : 100톤 하수슬러지 소각장 및 부대시설(2년간) ○위탁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기준	청 소 과	사회복지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5	성남시포상조례 중개정조례안	○근거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(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) -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「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」 ○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 □ 제안이유 ○그동안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발전 등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모범시민상을 수여하여 왔으나 해마다 시상부문을 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○성남시포상조례에 시상부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□ 주요골자 ○종전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 81년부터 시행한 모범시민상을 동조례에 포함하여 시상부문을 정하고자 함(안 제4조) ○모범시민상의 시상부문 및 대상규정(안 제8조) ○성남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(안 제9조) · 기능 : 모범시민상 시상대상자의 공적심사 · 구성 : 15인 이내	총 무 과	행정경제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6	판교·C통행료 징수민원대책을 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	☐ 제안이유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'99. 1월부터 그 동안 10차에 걸친 위원회 운영을 하여 왔으나 2000년 3월까지 1년 3개월간으로는 본 위원회가 목적인 바를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판교IC통행료 징수민원을 해결 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· 당초 : '99. 1월 ~ 2000. 3월 · 변경 : '99. 1월 ~ 2000. 9월(6개월 연장)	판교IC통행료 징수민원대책을 위한특별위원회	본회의
17	프로축구단성남 연고지유치관련 문제점조건의안	☐ 제안이유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를 위해 종합운동장 잔디를 교체하고 시체육회 산하 단체인 성남시 축구협회에서는 일화프로축구단과 연고지 조인식을 맺었으나 성남시체육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조사	문화체육과	본회의

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8	공영주차장위탁 관리 개선요청 의 건	☐ 제출자 ○ 중원구 금광1동 1795 나준호외 52인 ☐ 내 용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인근 주민이 사용하므로 주민화합과 공공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정책수립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관리자의 경영수지 및 의무규정 성실히행도와 공익기여도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요청 ☐ 분 류 : 청원에 관한 건	교통행정과	도시건설